###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2009 · 6 · 5 규칙 제398호 일부개정 2013 · 8 · 7 규칙 제485호 일부개정 2014 · 9 · 12 규칙 제520호 (이천시 규칙 중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) 일부개정 2016 · 7 · 5 규칙 제591호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
#### 제2장 대관

- 제2조(사용허가의 대상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이천아트홀(이하 "아트홀"이라 한다) 자체 공연·전시·행사(이하 "공연 등"이라 한다)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 등에 대하여 시설을 대관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1. 문화(전통문화를 포함한다)예술의 계승·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전시
  - 2.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의 문화예술 교류행사
  - 3.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, 교육 행사
  - 4. 그 밖에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행사
- 제3조(사용허가 신청)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다만, 정기대관 신청 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·전시·행사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일정을 정할 수 있다.〈신설 2013·8·7〉

- 1. 정기대관 신청: 해당연도를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신청(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)
- 2. 수시대관 신청: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
- 의 서류를 붙임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3·8·7〉
- 1. 공연(전시ㆍ행사)계획서
- 2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
- 3.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[별지 제2호서식]
- 4. 아트홀 사용에 따른 공연·전시프로그램(포스터, 전단, 팸플릿, 관람권 견본 등) 5부. 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3·8·7〉
- 제3조의2(사용허가)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· 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  - 1.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·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
  - 2.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
  - 3.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
  - 4.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이나 행사
  - ② 시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③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공연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,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.
  - ④ 수시대관은 소위원회 심의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3·8·7]

- 제4조(사용변경허가)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이나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, 변경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5조(대관 신청 접수 시기) 제3조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 시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1. 정기대관
    - 상반기(1월~6월) : 직전 연도 10월
    - 하반기(7월~12월) : 해당 연도 4월
  - 2. 수시대관: 정기대관 공백일에 한정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기관이나 경기도, 이천시가 주관·주최 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.

[제목개정 2013 · 8 · 7]

- 제6조(계약금 납부) ① 제3조의 2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금 납부 후 사용 취소시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- 제7조(사용료 납부 및 분납) ①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기한이 공·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사용료를 분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 의 50퍼센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용료도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는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, 2016·7·5〉
- 제8조(사용료의 특별징수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용료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연물은 순수예술(클래식, 연극, 무용, 국악 등) 장르를제외한 오락성 공연물을 말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오락성 공연물과 순수예술 장르의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은 운영

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〈개정 2013 · 8 · 7〉

- 제9조(사용료 감면)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1. 전액감면
  - 가. 국가 · 경기도 · 이천시가 직접 주최 · 주관하는 공연 등
  - 나. 한국예총이천시지부 및 이천문화원이 직접 주최·주관하는 공연과 추천을 받은 구성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은 연간 1회에 한정한다.
  - 다. 그 밖에 시장이 기초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2.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
  - 가. 비영리 목적으로 이천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
  - 나.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 예술공연
  - 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③ 시장은 전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,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할 수 있다.
- 제10조(사용료 반환청구)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11조(무대기술회의) ①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,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,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아트홀이 주 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용자는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12조(설비·물품 등의 반입·반출 등)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,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·반출의 절차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
- ② 전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・8・7〉
- **제13조(준수사항)**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1.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은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- 2. 피아노 조율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.
  - 3.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 거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휴관일 공시)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아 트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휴관사실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15조(관람권의 검인신청)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조 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관람권은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. 다만,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16조(관람수입의 정산보고) 사용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17조(홍보물 부착 등) ① 사용자가 각종행사, 공연,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, 부착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홍보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$\langle$ 개정  $2013 \cdot 8 \cdot 7\rangle$
- 제18조(소지물 제한) 시장은 아트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,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문화강좌

제19조(문화강좌 수강신청)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를 운영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

 $8 \cdot 7 \rangle$ 

- ②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③ 제2항의 수강자 결정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에 따르며, 3회 연속하여 수강한자는 후순위자로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④ 수강자로 결정된 자는 문화강좌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정해진 기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없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⑤ 시장은 아트홀 가족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20조(문화강좌 운영기간) ① 문화강좌는 1강좌당 20주 이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휴강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며 운영자는 수강생들에게 유·무선으로 강좌시작 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휴강에 대한 보강은 추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문화강좌의 수강인원은 1강좌 최소 7인으로 하며, 모집정원의 70퍼센트가 안 될 경우 시장은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21조(강사료 책정) ① 강사료는 이천시 예산편성세부지침 강사수당 지급기 준을 준용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강사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 대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  $\langle$ 개정  $2013\cdot 8\cdot 7\rangle$
- 제22조(수강료 환불)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, 2016·7·5〉

### 제4장 운영위원회

- 제23조(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아트홀 대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트홀 소위원회를 둔다.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소위원회는 수시대관 운영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. 〈신설 2013・8・7〉

-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아트홀 소장으로 한다. 〈신설 2013·8·7〉
- ④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2명으로 하며,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. 〈신설 2013·8·7〉
- ⑤ 위원장은 소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〈신설 2013·8·7〉

[제목개정 2013 · 8 · 7]

제24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 위원장은 자료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3·8·7]

- 제25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  - 1.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
  - 2. 출석위원 성명
  - 3. 심의사항
  - 4. 심의결과
 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3·8·7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・8・7 규칙 제485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·9·12 규칙 제520호,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 · 7 · 5 규칙 제591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4·9·12〉

### 이천아트홀 사용신청서

	신 청 인	구	분	□단체/법인		개인	
	단 체 /	/ ні	인		대 표 자 성 명		
	전 세 / ( 개 약				생 년 월 일		
신 청 인					(사업자등록번호)		
건 6 년	주		소				
					사 무 실 전 화		
	담당자 선	성	명		핸 드 폰		
					E - m a i l		
	대 관	구	규	□정기대관		수시대관	
	대 관	장	소	□대공연장	□소공연장	□전시장	
구 분	공연명(	행사	평)				
	공 연	장	已	□클래식 □== □연극 □두			
	대 관	일	자		사용시간		
	년	월	일	오전	오후	야간	
	년	월	일	오전	오후	야간	
	년	월	일	오전	오후	야간	
대 관	년	월	일	오전	오후	야간	
신청내용	년	월	일	오전	오후	야간	
	※ 사용시간			오전09:00-12:00 오후 13:00-17:00 야간18:00-22: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·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, 사용종 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.			
	냉·난방	사용	-여부				
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: (인)

### 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13・8・7〉

##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

□ 전시기간: 년 월 일( : ~ : )

□ 전 시 분 야 : 회화, 조각, 서예, 도자기, 기타 (

<ul><li>□ 전시 작품수 :</li><li>□ 전시작품 목록 내역</li></ul>	작품			
구 분 분 야	작 품 명	규 격	수 량	비고
계				
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전시작품 내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 : 주 소 : 연락처 :

이 천 시 장 귀하

분 야

분 야

# 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13·8·7〉

#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

### 허가번호:

사 용	주소								
자	성명								
허7	가종류								
허7	가내용								
허7	가기간								
사	용 료	계		기본		부속설비			
7] E	타사항								
따		이천아트홑 - 같이 사용			동조례 시형	생규칙 제3 <i>조</i>	-제3항에		
			년	월	일				
	이 천 시 장								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# 이천아트홀 사용 허가대장

허가	사용허가	사용	기간	허가내용	٨	나 용 자		사 용	חן יי
번호	일 자	일자	시간	이/대공	주	소	성명	시설물 내 용	비고

#### [별지 제5호서식] 〈개정 2013 · 8 · 7〉

# 이천아트홀 사용변경(중단)신청서

	리웨버(고성키)	대표ス	· 성명
신 청 인	단체명(공연자)	연 5	라 처
신 청 인	주 소		
	담당자 성명	연 현	각 처
	공연(행사)명	장	己
구 분	사 용 시 간		
	대 관 장 소		
	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장 소 변 경		
변경신청내용	일 정 변 경		
전성신성대중	내 용 변 경		
	취 소		
	기 타		
사 유			
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천아트홀을 사용하고자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변경,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: 대 표 자 성 명 : (인)

#### [별지 제6호서식] 〈개정 2014·9·12〉

# 사용료 분납 신청서

단 체 명	대	표자	생님	년월일	
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		·		연락처	
전시·공연· 행사의 명칭					
전시·공연· 행사의 내용					
사 용 기 간 및 시 간	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(일 시간 회)				
	기본시설 대공연장, 소공연장, 전시장(평)				
사 용 시 설 및 설 비	부속설비				
사용료금액		원	분납가	월	
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7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천아트홀 대관 사용료를 분납코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:

성명: (인)

# [별지 제7호서식] 〈개정 2014·9·12〉

# 사용료 반환 청구서

	주	소									
신 청 인	단체	메명				전 화	사무 자				
	성 (대표	•				 생 년 <sup>5</sup> 사업자등	<u>'</u> 월 일	<u> </u>			
허 가	내	용									
예약된시	<b>나용</b> 시	설									
사용료기	기납부	액									
반 환 경	성 구	액									
반환 청	반환 청구 사유										
이천, 라 위와							조례	시행	구칙 기	제10조에	따
								년	و	월	일
					<sup>1</sup> 자 소 명	:					
첨부서류	첨부서류 : 1.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.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. 계약서										
이 천 /	시 장	귀하									

### [별지 제8호서식] 〈개정 2013·8·7〉

# 공연장비 반입 · 반출 신고서

○ 반입: 년 월 일( : ~ : )○ 반출: 년 월 일( : ~ : )

구 분	품 명	규 격	수 량	비고

년 월 일

위 장비를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반입·반출합니다.

회 사 명:

주 소:

(연락전화번호)

대 표: (인)

□ 입장권 요금 및 검인신청매수

### [별지 제9호서식] 〈개정 2013·8·7〉

# 관람권 검인 신청서

□ 공 연 명 :						
□ 공연기간 :	년	월	일 ~	년	월	일
□ 공연장소 :						

금 액 공연일자	계	초대권	원권	원권	원권	원권	비고
	미}	매	미	미	미	매	매
	매	매	매	매	매	매	매
	매	매	매	매	매	매	매
	매	매	매	매	매	매	매
	매	매	매	매	매	매	매
	매	매	매	메	매	미}	매
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 년 월 일

신청자 주 소 :

성 명 : (인)

### [별지 제10호서식] 〈개정 2013・8・7〉

### (관람·입장)수입정산내역서

단	체	명	:	
주		소	:	
대	丑	자	:	
행	사	명	:	
사-	용기	간	:	
사-	용시	설	:	
수	입나	역	:	

구 분	검	인	판	매		정	산 내	역
(관람·입장)권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잔여매수	기 금 및세금	회 관 사용료	입 장 수입액
계								
원권								
원권								
원권								
초 대 권								
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8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.

년 월

작성자 직급	성 명 :	(인)
입회자 주소	성 명 :	(인)
환이자 직위	성 명 :	((0)

일

[별지 제11호서식] 〈개정 2014・9・12〉

# 이천아트홀 문화강좌 수강신청서

#### 일련번호 :

수강신청과목		수 강 료					
성 명		기 참여강좌	□유 □무 (강좌명: )				
생년월일		성 별	□남 □여				
전화번호		납 부 방 법	□ 온라인입금 (농협 301-0026-8562-11)				
		입 금 자 명					
주 소							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.							
	년 월	일					
		신청인 :	(성명 또는 날인)				
이 천 시 장 귀하							

### [별지 제12호서식] 〈개정 2014·9·12〉

# 이천아트홀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서

관리자 :	성 명			생년월일				
	주 소			전화번호				
환부방법	계좌입금	계좌번호						
수강과목	수강기관	총납부액	기이용금액		반:	환금액	반환사유	
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	년	월	일				
	청	구 자:			(인)			
이 ᅱ 시	<b>T</b> I -1 -1							
이 천 시 장 귀하								